

의안번호	제 224 호
의 결 연 월 일	2008년 월 일 (제 269 회)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08년 4월 7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24
------------	-----

제출연월일 : 2008년 4 월 7 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관련 사무를 정비하고, 행정 환경의 변화와 현실에 맞게 사무 권한을 조정함으로써, 행정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 '08. 1. 1. 기구개편에 따른 조문 정비

- 조문내용 중 “생명산업추진단장”을 삭제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생명산업추진단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삭제 [생명산업추진단(사업소) 폐지로 위임대상기관에서 제외됨]

#### □ 부서별 주요내용

##### ○ 지역개발팀

-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 도지사 권한 사무로 신설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사무”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함.

##### ○ 건설정책팀

-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관한 사무”가 도지사 권한 사무에서 국가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무를 삭제함

##### ○ 청소년아동과

-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청소년 사무 관련 위임 사무가 도지사 권한 사무에서 시장·군수 권한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무 삭제

## ○ 환경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개정 등에 따라 대기배출업소 인·허가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삭제된 사무, 사무명칭 등이 변경된 사무 등) 및 근거법령을 정비함

- 황함유기준 초과 연료의 사용승인 위임사무 삭제
- 청문(대기환경보전법 제85조) 위임사무 삭제
- 폐기물인계서의 접수 및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인정 삭제
- 토양정밀조사, 토양오염 행정조치 관련 사무 삭제 등

## ○ 수질관리과

- “공공하수도 설치 관련사무”가 그간 도사무(하수종말처리시설)와 시군 위임사무(하수종말처리시설외)로 구분하여 운영하던 것을

조정하여 도지사 권한 사무로 일원화하고자 시·군 위임 사무를 삭제함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외 개별법

**4.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충청북도조례 제 호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4항, 제5조 중 “생명산업추진단장,”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청소년아동과 소관 사무를 삭제하고, 지역개발팀, 건설정책팀, 환경과, 수질관리과 소관 사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령
지 역 개발팀	1	· 택지개발사업 시행관련분묘등의 정리	택지개발촉진법 제15조
	2	· 행정처분 및 명령 (시·군에 위임된 사무에 한함)	동법 제133조
	3	·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	동법 제32조
	4	·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고시	동법 제33조, 제48 조 제3조
	5	·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변경, 폐지 및 이행담보, 열람 및 고시	동법 제88조 내지 제91조
	6	·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수리,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필증 교부, 공사 완료공고	동법 제98조
	7	· 행정청이 아닌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발계획변경중 도시개발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나.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고시  다.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및 고시  라.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협의  마.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수리  사.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행위  아.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협의 및 통지  자.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도시개발법 제4조 동법 제9조 동법 제17조, 제18조 동법 제19조 동법 제19조의2 동법 제25조 동법 제57조 동법 제65조 동법 제67조
	8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나. 선수금 승인  다. 준공검사  라.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필증의 교부, 보완시공 등의 조치  마. 준공검사를 위한 협의  바.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	동법 제13조 동법 제24조 동법 제49조 동법 제50조 동법 제51조 동법 제52조
	9	·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소공원,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의 결정(변경 포함)  나.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변경 포함)  다. 위의 가, 나 사무의 고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제시행령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건 정 책 설 립	1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와 전문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	동법시행령 제17조
	2	·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점용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권한  가. 도로점용 허가 및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무  나. 점용공사의 확인  다. 점용료의 징수  라. 점용료의 징수제한  마. 원상회복  바. 면상금의 징수  사. 수수료의 징수  아. 과태료 부과징수	도로법 제40조제1항 및 제64조  동법 제40조제3항  동법 제43조제1항  동법 제44조  동법 제45조  동법 제80조의2  동법 제77조의2  동법 제86조의2
	3	·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접도구역 안에서의 다음 행위 금지에 관한 권한  가.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등의 행위  다.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동법 제50조제4항  동법 제50조제4항  동법 제50조제6항
	4	·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점용 및 접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권한  가. 권리의무의 양도허가, 신고의 수리  나. 권리의무의 상속신고의 수리  다. 발기인으로부터의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라.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수리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
	5	·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의 다음 각호의 사항  가. 타 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 시행 명령  나.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다. 도로 손괴자에 대한 부담금의 징수  라.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 명령  마.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  바. 도로에 관한 조사  사. 통행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강제징수  아. 도로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 (협의 김정 분할측량, 보상금지급, 잔여지매입, 소유권 이전 등)  자. 도로등과의 연결허가	동법 제29조  도로법 제31조  동법 제54조제1항  동법 제67조제1항  동법 제75조  동법 제76조의2  동법 제7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도로법 제54조의6제2항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
	6	· 도유재산 용도폐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1조
	7	· 도유재산 관리 및 사용 · 수익허가	동법 제14조, 제20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 법령
환경과	1	· 대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 고시 및 고시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도에서 설치하는 대기측정망은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제5조
	2	·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동법 제17조
	3	· 연료용 유류에 관한 다음 사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 1·2종 사업장중 아스콘제조시설 및 일반보일러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 범위에 포함) 가. 연료의 공급 · 판매 또는 사용금지 및 제한, 조치명령  나. 연료의 제조 · 판매 또는 사용금지 및 제한, 조치명령, 승인	동법 제41조제4항  동법 제42조
	4	·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한 다음사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 1·2종 사업장중 아스콘 제조 시설 및 일반보일러 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 범위에 포함) 가. 신고 및 변경신고  나. 이행 또는 개선명령,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 등의 사용중지, 사용제한 명령	동법 제43조제1항  동법 제43조제2항, 제3항
	5	·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시설 신고 및 변경신고, 조치명령	동법 제44조제1항, 제2항, 제7항
	6	· 보고 및 검사 등	동법 제82조
	7	· 과태료의 부과 징수(단, 도 광역단속반에 의한 사항과 지방환경청장 및 유역환경청장의 권한 제외)	동법 제94조
	8	· 방제조치의 이행명령, 대집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제4항
	9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오염물질 채취, 서류 · 시설 · 장비 검사의뢰 · 납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 1·2종 사업장중 아스콘 제조 시설 및 일반보일러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 범위에 포함)	동법 제68조
	10	· 토양환경보전법 위반행위조사확인, 과태료납부통보, 의견진술의 기회 제공 등 조치	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19조
	11	· 폐기물관리 관련 다음사항  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변경포함) 적정여부판단 · 통보 및 협약(변경 협약)  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협약취소, 영업정지 명령  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라.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수리  사.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아.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전산기록관련 자료요구  자. 폐기물 재활용신고 수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동법 제27조  동법 제28조  동법 제32조제2항  동법 제33조  동법 제37조  동법 제40조  동법 제45조  동법 제46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 법령
	차.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카. 청문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파. 폐기물 보관량의 변경 및 보관·처리기간의 연장승인 하.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 및 시설의 승인·변경승인 및 통보 거. 허가증의 재교부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기질 유지기준 설정 나.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등의 개선명령 다. 보고 및 검사 라.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48조 동법 제61조 동법 제6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규칙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동법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9조 동법 제13조 동법 제16조
12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다음사항 가. 건설폐기물의 임시보관장소(변경)승인  나. 건설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변경포함) 적정여부 판단·통보 및 허가(변경허 가) 다.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승인 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취소·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징수 마.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및 신고 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수리 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 아. 의제처리를 위한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자.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및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수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동법 제21조, 제22조 동법 제23조 동법 제25조, 제26조 동법 제27조 동법 제28조 동법 제29조 동법 제30조 동법 제31조, 제33조
13	· 먹는물 관리와 관련한 다음 사항 가.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는 제외)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2항
수 질 관 리 과	2 · 수처리제 제조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변경등록 나. 영업의 휴업·폐업·재개업 등의 신고 수리 다. 영업허가 등의 제한 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수리 마. 품질검사를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권한 바. 출입·검사·수거 등 사. 지도 및 개선명령 아. 사업장 폐쇄 조치 등 자. 폐기처분 등 차.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카. 청문 타.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의 권한 파.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권한 · 유통샘물관련사업장의 출입·검사·수거등	먹는물관리법 제18조제2항 동법 제18조제6항 동법 제21조 동법 제22조제3항 동법 제33조제2항 동법 제34조 동법 제36조 동법 제38조 동법 제39조 동법 제40조 동법 제42조 동법 제43조제1항, 제3항 동법 제51조제2항, 제3항, 제4항 먹는물관리법 제34조
3		

[별표 4]

####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대상실과	일련 번호	사　　　무　　　명	위임대상 기　　　관	근 거 법령
총 무 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학내 전보권</li> <li>부교수이하 임용권</li> </ul>	총　　　북 과학대학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55조제5항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원내 전보권</li> </ul>	자치연수 원　　　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연구직·지도직의 호봉승급</li> <li>6급이하 지방공무원(지도사·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공무원의 원내 전보권</li> <li>5급상당 지방연구관·지도관의 공무원의 원내전보권 (연구소장 및 시험장은 제외)</li> </ul>	농업기술 원　　　장	"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급이하 지방공무원(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공무원의 원내 전보권</li> </ul>	보건환경 연구원장	"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본부내 전보권</li> </ul>	도로관리 사업소장	"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급이하 지방공무원(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권</li> </ul>	산림환경 연구소장	"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급이하 지방공무원(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li> </ul>	축산위생 연구소장	"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li> </ul>	농산사업 소　　　장	"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li> </ul>	청남대관리 사업소장	"

## 신·구조문대비표

[별표1]

##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지 역 개발팀	1~6	(생 략)		지 역 개발팀	1~6	(현행과 같음)	
	7	· 행정청이 아닌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라(생 략)  <u>&lt;신설&gt;</u> <u>마~아(생 략)</u>			7	· 행정청이 아닌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라(현행과 같음) 마.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u>바~자(현행과 같음)</u>	(현행과 같음) 도시개발법 제 19조의 2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 설 정책팀	1	· 전문건설업에 관한 다음사항  <u>가. 등록</u> <u>나. 변경사항 신고수리</u> <u>다. 양도, 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수리</u> <u>라. 업체에 대한 보고·조사·검사·재무관리상태의 진단 및 자료 제출요구</u> <u>마. 시정명령·지시</u> <u>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u> <u>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u> <u>아. 청문</u> <u>자. 과태료 부과·징수</u> <u>차. 등록대장의 작성·보관</u>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동법 제9조의2 동법 제17조  동법 제49조  동법 제81조  동법 제82조 동법 제83조 동법 제86조 동법 제101조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	건 설 정책팀		<u>&lt;삭제&gt;</u>	
	2~8	(생 략)			1~7	(현행과 같음)	
청소년 이동과	1	· 청소년수련시설 관련업무  <u>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u> <u>나. 청소년수련시설 폐지의 신고 수리</u> <u>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등록 수리</u> <u>라. 청소년 수련시설의 등록증 교부</u> <u>마.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시정 명령</u> <u>바.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보험 기입</u>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9조제3항  청소년기본법 제34조의2제2항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3항, 제4항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항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4항  청소년기본법 제29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청소년기본법 제25조			<u>&lt;삭제&gt;</u>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환경파	1	· 과태료의 부과 징수(단, 도 광역 단속반에 의한 사항과 지방환경청장 및 유역환경청장의 권한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	환경파	1	· 대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 고시 및 고시에 따른 토지 등 의 수용 및 사용 (도에서 설치하는 대기측정망은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제5조
	2	· 대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 고시 및 고시에 따른 토지 등 의 수용 및 사용 (도에서 설치하는 대기측정망은 제외)	동법 제4조 및 제5조		2	·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동법 제17조
	3	·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동법 제8조의2		3	· 연료용 유류에 관한 다음 사항 (사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외의 사업장,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 1·2종 사업장 중 아스콘제조시설 및 일반보일러시설에 국화될 경우 위임 범위에 포함)	연료용 유류에 관한 다음 사항 (사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외의 사업장,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 1·2종 사업장 중 아스콘제조시설 및 일반보일러시설에 국화될 경우 위임 범위에 포함)
	4	· 연료용 유류에 관한 다음 사항 (사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외의 사업장,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 1·2종 사업장 중 아스콘제조시설 및 일반보일러시설에 국화될 경우 위임 범위에 포함)	동법 제26조제1항		4	가. 황함유기준 초과 연료의 사용승인	동법 제41조제4항
		나. 연료의 공급 · 판매 또는 사용금지 및 제한 조치명령	동법 제26조제2항		5	나. 연료의 제조 · 판매 또는 사용금지 및 제한, 조치명령	동법 제42조
		다. 연료의 제조 · 판매 또는 사용금지 및 제한, 조치명령	동법 제27조		6	가. 신고 및 변경신고	동법 제43조제1항
		가. 신고 및 변경신고	동법 제28조제1항		7	나. 이행 또는 개선명령,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 등의 사용중지, 사용제한 명령	동법 제43조제2항, 제3항
		나. 이행 또는 개선명령,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 등의 사용중지, 사용제한 명령	동법 제28조제2항, 제3항		8	· 회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시설 신고 및 규제	동법 제44조제1항, 제2항, 제7항
		· 보고 및 검사등	동법 제49조제1항, 제3,4,4호		9	· 보고 및 검사 등	동법 제82조
		2.4의3.5, 8의2호					
		· 청문	동법 제52조 제호, 제4호, 제7호			· 과태료의 부과 징수(단, 도 광역 단속반에 의한 사항과 지방환경청장 및 유역환경청장의 권한 제외)	동법 제94조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 점검, 오염물질 채취 검사의뢰 (사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외의 사업장,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 1·2종 사업장 중 아스콘제조시설 및 일반보일러시설에 국화될 경우 위임 범위에 포함)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			· 방제조치의 이행명령, 대집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제4항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10	· 방재조치의 이행명령, 대집행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3항제4항		9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오염물질 채취, 서류·시설·장비 검사 의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 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 장,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 업장 세외다만, 대기 1·2종 사업장 중 아스콘 제조 시설 및 일반보일러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 범위에 포함)	동법 제68조
	11	· 토양정밀조사와 관련한 다음 사항  가.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나.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다. 타인토지에의 출입 및 장애물의 변경 제거  라. 순실보상	토양환경보전법제 5조 제2항, 제 항				
	12	· 토양오염 행정조치와 관련한 다음 사항 가. 토양정밀조사 명령 및 조치 명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13	· 과태료의 부과·징수·이의신청 처리	동법 제32조		10	· 토양환경보전법 위반행위조사 확인, 과태료납부통보, 의견진 술의 기회 제공 등 조치	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19조
	14	· 폐기물관리 관련 다음사항  가. 폐기물인계서의 접수 및 폐 기물간이 인계서 작성 인정  나. 폐기물처리업자 사업계획(변경포 함) 적정여부 판단·통보 및 허가 (변경허가)  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허 가취소, 영업정지 명령  라.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정 금의 부과·징수  마.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 관과의 협의  바.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사.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수리  아.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 폐기물 처리  자. 폐기물 재활용신고 수리  차.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전 산기록 관련 자료요구  카.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타. 청문  파. 과태료의 부과·징수  하. 폐기물 보관량의 변경 및 보관·처리기간의 연장승인  거.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및 시설의 승인·변경승인 및 통보  너. 허가증의 재교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동법 제26조  동법 제28조 동법 제29조 동법 제31조 동법 제32조 동법 제42조 동법 제43조의2 동법 제44조의2 동법 제44조 동법 제45조 동법 제57조 동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4 동법시행규칙 제19조		11	· 폐기물관리 관련 다음사항  가. 폐기물처리업자 사업계획(변 경포함) 적정여부판단· 통보 및 허가(변경허가)  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허 가취소, 영업정지 명령  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정 금의 부과·징수  라.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 관과의 협의  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 리  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수리  사.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 폐기물 처리  아.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전 산기록 관련 자료요구  자. 폐기물 재활용신고 수리  차.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카. 청문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파. 폐기물 보관량의 변경 및 보관·처리기간의 연장승인  하.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 및 시설의 승인·변경승인 및 통보  거. 허가증의 재교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  동법 제27조 동법 제28조 동법 제32조제2항 동법 제33조 동법 제37조 동법 제40조 동법 제45조 동법 제46조 동법 제48조 동법 제61조 동법 제6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규칙제31 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15	<p>·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공기질 유지기준 설정</p> <p>나.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등의 개선명령</p> <p>다. 보고 및 검사</p> <p>라. 과태료 부과</p> <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다음사항</p> <p>가. 건설폐기물의 임시 보관장소·보관기간·연장 승인, 수집·운반차량에 대한 표기 또는 부착크기에 대한 조정</p> <p>나. (생략)</p> <p>다.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승인</p> <p>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 취소·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징수</p> <p>마.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신고 수리, 건설공사 현장 이외에서의 재활용 승인</p> <p>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 개시 신고수리</p> <p>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p> <p>아. 의제처리를 위한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p> <p>자.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및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수리</p>	<p>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p> <p>동법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p> <p>동법 제13조</p> <p>동법 제16조</p> <p>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p> <p>(생략)</p> <p>동법 제23조</p> <p>동법 제25조, 제26조</p> <p>동법 제27조</p> <p>동법 제28조</p> <p>동법 제29조</p> <p>동법 제30조</p> <p>동법 제31조, 제33조</p>		12	<p>·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공기질 유지기준 설정</p> <p>나.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등의 개선명령</p> <p>다. 보고 및 검사</p> <p>라. 과태료 부과·징수</p> <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다음사항</p> <p>가. 건설폐기물의 임시 보관장소(변경)승인</p> <p>나. (현행과 같음)</p> <p>다.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승인</p> <p>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 취소·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징수</p> <p>마.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및 신고</p> <p>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수리</p> <p>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p> <p>아. 의제처리를 위한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p> <p>자.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및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수리</p>		<p>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p> <p>동법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9조</p> <p>동법 제13조</p> <p>동법 제16조</p> <p>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p> <p>(현행과 같음)</p> <p>동법 제23조</p> <p>동법 제25조, 제26조</p> <p>동법 제27조</p> <p>동법 제28조</p> <p>동법 제29조</p> <p>동법 제30조</p> <p>동법 제31조, 제33조</p>
수질 관리과	1	(생략)		수질 관리과	1	(현행과 같음)		
	2	·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공공하수설치 인가에 관한 권리 및 인가된 시정의 변경 또는 폐지	하수도법 제6조 제1항			<삭제>		
	3	· 하수종말처리시설외의 공공하수도설치공사의 위법공에 대한 중지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	동법 제36조			<삭제>		
	4~5	(생략)			2~3	(현행과 같음)		

[별표 4]

##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위임대상 기관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위임대상 기관	근거법령
총무과	1.~4.	(생략)	(생략)	(생략)	총무과	1.~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 5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단내 전보권	생명산업 추진단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삭제>		
	6.~10.	(생략)	(생략)	(생략)		5.~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

### 공 통

####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역개발팀

#### 【도시개발법】

제19조의2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①지정권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를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할 자로 지정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그에게 소속된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공하는지에 대한 확인
2.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계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시험의 실시 여부의 확인
4.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에 관한 감리업무로서 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③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시행자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시공자 및 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의 시정통지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지정권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시행자는 감리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배치된 감리자 또는 감리원(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 또는 그에게 소속된 감리원을 포함한다)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당해 시행자 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공급을 받은 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도시개발사업의 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 그 밖에 자격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면허취소·자격정지·영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시행자와 감리자 간의 책임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⑧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하여야 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대상, 감리방법 및 절차, 감리계약,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

등 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3·제27조의4·제28조의7 및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 한다.

⑩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대상 및 「주택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감리대상에 해당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의2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업무범위 등)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할 것
2.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 1인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할 것
3. 총괄감리원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전 기간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간동안 배치할 것
4. 감리원을 다른 사업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19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1.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 확인
2.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의 확인
3. 시공계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4.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정권자는 법 제19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9조의2제8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감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 책임감리
2.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경우 : 시공감리

⑤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감리원의 배치기준, 감리방법 및 절차, 감리

계약 등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다.

### 건설정책팀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확인
  - 가. 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 나.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 다.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수리(受理)
3.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
- 3의2. 법 제11조에 따른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의 조치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5.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말소
6. 삭제 <2007.12.28>
7. 삭제 <1999.8.6>

8.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지시
9.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10.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 10의2. 법 제85조의3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11.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2.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12의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
1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보관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③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수련시설의 허가요건)** 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할 것
2. 당해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3. 당해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
4.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허가하는 경우 당해 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요건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27조(수련시설의 휴지·폐지)** ①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설의

운영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련시설의 등록)** ① 수련시설은 이를 운영하기 전에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시정명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운영단체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당해 수련시설이 제17조의 시설기준, 제18조의 안전기준 및 제19조의 운영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보험가입)** 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수련시설의 종류 및 보험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7조(수련시설의 등록)**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등록대장에 기록한 후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가입)**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수련시설은 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을 말한다. 다만, 건축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청소년문화의집은 제외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실손해액으로 하되

사망의 경우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1. 사망의 경우에는 8천만원
2. 부상의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 (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중에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 부상한 자에게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 환경과

###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①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排出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의 조사방법, 조사절차,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함유기준)** ①환경부장관은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종류별로 황의 함유 허용기준(이하 "황함유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연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별 또는 사용시설별로 필요한 연료의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공급지역 또는 사용시설에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같은 지역 또는 시설에서 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도지사가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외의 사업장만 해당한다. 이하 제42조에서 같다)는 제2항에 따라 연료의 공급지역이나 시설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2조 (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료를 제조·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연료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 (비산(飛散)먼지의 규제)** ①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

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4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① 특별대책지역이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이 고시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대기환경규제지역"이라 한다)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도지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외의 사업장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도는 그 시·도의 조례로 제4항에 따른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시·도에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설치신고를 하였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방지시설에 대하여도 제5항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을 위반하는 자에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그 배출의 억제·방지를 위한 시설의 개선 등 필

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2조 (보고와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 전문 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16조나 제32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 받은 관계 전문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제32조제7항에 따른 사항만 해당한다), 제62조와 제63조에 따른 검사업무와 제64조에 따른 검사업무대행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검사 한다.

1. 사업자
2. 제41조제1항에 따라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유류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
3. 제42조에 따라 연료를 제조·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당한 자
4.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5. 제44조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6. 제46조에 따른 자동차제작자
7. 제62조제2항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업무나 정밀검사의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자
8. 제74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개선결과의 확인업무를 위한 확인검사 대행자
9. 제77조에 따라 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나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
10. 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과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5조(청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6조제1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2.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의 공급,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
3. 제42조에 따른 연료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
4. 제51조제4항이나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
5. 제55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6. 제66조에 따른 지정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7. 제73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1항제3호나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제3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6.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7.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석탄·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8. 제44조제2항이나 제45조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51조제5항(제5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과 부품결함 현황을 보고하지 아

## 니한 자

11. 제64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2.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7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5.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6.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70조제2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개선결과를 확인받지 아니하거나 확인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8.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배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원유(석유가스)를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
3.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4.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이하 "행위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물질을 제거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의 방지·제거를 위한 조치(이하 "방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자등이 방제조치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자등에게 방제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당해 방제조치의 대집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명령은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으로 본다.

**제68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 준수, 제38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1. 사업자
2. 종말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
3.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4.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수질오염원의 신고를 한 자
5.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자
6.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토양환경보전법】

- 제5조 (토양오염도 측정등)** ①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토양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토양오염도를 상시측정하여야 한다.
-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관할구역안의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의 실태를 조사(이하 "토양오염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설치기준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대상지역 선정기준, 조사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④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측정(이하 "상시측정"이라 한다)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2.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3. 그 밖의 토양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 ⑤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결과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지역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측정망 설치구역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손실보상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타인토지에의 출입등)**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제5조제4항·제11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있는 나무·돌·흙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지상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할 날 또는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날

의 3일전까지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④ 일출전·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는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하지 못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고자 하는 공무원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 (손실보상)**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1.3.28, 2004.12.31>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등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1.3.28, 2004.12.3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1.3.28, 2004.12.31>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제15조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경

우에는 오염원인자 및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실시하도록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양정화를 실시할 수 있다.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2. 당해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3. 오염토양의 정화

⑥환경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⑦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자
2. 제11조제3항·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4항·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양정밀조사결과를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책지역안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버린 자
8. 제23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9. 제23조의2제4항 및 제23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0. 제23조의7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1. 제23조의14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2.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12.13, 2001.3.28>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 제1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는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부과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

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 과태료의 금액 및 징수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46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폐기물을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2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④ 제45조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해당 폐기물의 배출자, 수집·운반자 또는 처리자가 확인·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배출자, 수집·운반자 또는 처리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그 폐기물의 배출·운반 및 처리 과정을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5조 (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

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 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상수원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8.3>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폐기물최종처리업과 폐기물종합처리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8.3>

**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2.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반 중에 서류 등을 지니지 아니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이를 내보이지 아니한 경우
5.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6.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7.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8.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9. 제2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운반·처리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11. 제3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13.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31조제6항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33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7.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18. 제4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9.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 20.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전문개정 2007.8.3]

**제28조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8.3>

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처리업체에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시·도지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각각 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 주체가 사용되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32조 (다른 법령에 따른 혜가·신고 등의 의제(의제))**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혜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혜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3.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②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5.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3.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나 신고의 처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제33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폐기물처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 (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43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2.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 3. 삭제 <2007.8.3>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조업을 중단(휴업이나 영업정지 처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제4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이하 "방치폐기물"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1. 제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낸 경우 :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방치폐기물)의 처리 명령
2. 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방치폐기물의 처리와 보험사업자에게서 보험금 수령
3. 삭제 <2007.8.3>

### 제45조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개정 2007.8.3>) ①

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과 제3항에 따라 입력된 기록(이하 "전산기록"이라 한다)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이하 "전산처리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전자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전산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③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④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전산기록이 입력된 날부터 3년간 전산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⑤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전산기록을 전송한 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그 전산기록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요구받은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제46조 (폐기물 재활용 신고)** ①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관 시설 및 재활용 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자
2.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공정 규격이 설정된 비료 또는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부산물비료(부산물비료)를 제조하는 자
3. 「사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성분등록을 한 사료를 제조하는 자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재활용 제품을 제조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5.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그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를 포함한다)
6.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에 정한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활용 신고를 한 자(제3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제48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3조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를 한 자
2.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3.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자가 발생시킨 방치폐기물 중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기

물처리업자나 재활용신고자에 대하여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방치폐기물이 있으면 그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사업장을 제33조에 따라 승계한 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의 사업장을 인수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처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③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명령을 받을 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 변명이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 보전상 긴급히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 (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2.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제68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1. 제13조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와 제66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 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자
3.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66조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같은 항 제3호의 자
- 6의2.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40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1.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2. 제17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자

4.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때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5. 제17조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6. 제19조제1항이나 제2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 등을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보이지 아니한 자

7.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8. 삭제 <2007.8.3>

9. 제3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11.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삭제 <2007.8.3>

5.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

6.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8.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제38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11.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⑥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 나. 폐기물의 발생이나 배출당시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되거나 배출된 경우

- 다.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 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그 구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2.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흘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
  3.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25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인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다만, 별표 3 제1호나목에 따른 기계적 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한 후 새로 발생되는 폐기물 중 그 성질과 상태가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로 보아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와 그 밖의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다만,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라 한다)가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할 것. 다만, 화재, 중대한 사고, 노동쟁의, 방치 폐기물의 반입·보관 등 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

장·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우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 가. 폐산(폐산)이나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중화처리한 후 적정하게 처리할 것
    - 나. 일반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고온소각 할 것
  9.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와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차수시설), 집수시설(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정조(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이나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침출수나 가스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나 가스의 발생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10. 분진·소각재·오니류(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할 것
  1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운반기준)** ① 영 제7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싣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은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운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1개소로 제한할 것
2. 임시보관장소에서 보관할 수 있는 허용량 및 기간은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 및 기간 이내일 것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임시보관장소의 설치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폐기물의 수집·운반 계획서
2. 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과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변경승인신청서에 설치승인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임시보관장소의 변경승인을 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임시보관장소 소재지의 변경(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행정기관의 관할 구역 안에서의 소재지 변경만 해당한다)
2. 보관대상 폐기물 종류의 변경
3. 승인받은 허용량의 변경

⑤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를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내용을 즉시 해당 수집·운반업의 허가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1조 (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기준)** ① 영 제7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폐기물 재활용신고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폐전주(폐전주를 철거할 때 발생하는 폐애자·폐근가 및 폐합성수지제 커버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관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전주의 철거공사현장과 그 폐전주 재활용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거리가 50킬로미터 이상일 것

나. 임시보관시설에서의 폐전주 보관 허용량은 50톤(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보관하는 경우에는 100톤) 미만일 것

다. 폐합성수지제 커버류는 별도로 보관할 것

2. 폐기물 재활용신고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보관시설에 태반을 보관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보관시설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일 것

나. 태반의 배출장소와 그 태반 재활용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 보관시설에서의 태반 보관 허용량은 5톤 미만일 것

라. 보관시설에서의 태반 보관 기간은 태반이 보관시설에 도착한 날부터 5일 이내일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신고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관시설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 설치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신고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폐기물의 수집·운반 계획서
2. 보관시설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과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임시보관시설 변경승인신청서에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받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폐기물보관시설 소재지의 변경(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행정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소재지 변경만 해당한다)
2. 승인받은 보관량의 변경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폐기물보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설치를 승인한 시·도지사는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내용을 즉시 해당 재활용신고업체를 관할하는 재활용신고 수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30조(허가증의 재발급)**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증을 끓어버리거나 허가증이 훈어 못 쓰게 되면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1조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① 법 제25조제8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및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31>

1. 제9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임시보관장소로 승인받은 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수집·운반업 : 중량 450톤 이하이고 용적이 300세제곱미터 이하, 5일 이내

2. 제9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임시보관장소로 승인받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 냉장 보관할 수 있는 섭씨 4도 이하의 전용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 5일 이내, 그 밖의 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
3. 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중간처리업 및 폐기물 종합처리업 :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보관량 이하, 30일 이내(매립시설의 일정 구역을 구획하여 폐석면을 매립하기 위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4.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 1일 처리용량의 5일분 보관량 이하, 5일 이내  
 ② 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은 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화재 등 중대한 사고, 방치폐기물의 반입·보관 등으로 그 기간 이상 보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질관리과

## 【하수도법】

- 제11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 또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 지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시·도지사는 국가의 보조를 받아설치하고자 하는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공사의 중지명령 등)** ①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공하수도 설치에 관한 인가권자(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인가권자를 말하며,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말한다)는 그 공사의 중지·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고시를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때
2. 인가 또는 고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때
3.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 환경부장관은 제12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 등에 적합

하지 아니하게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1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설치인가(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시·도지사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 목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6. 사업시행기간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② 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도서만을 첨부할 수 있다.

1. 예정 배수구역 또는 예정 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2. 예상 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3.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상 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

4. 처리수의 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5.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6. 시가지도면과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8.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도서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관리공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제8조(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 등)**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하려면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류와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하수도법 시행령】

**제20조 (공공하수도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등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하는 자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설치기준·관리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위반내역
2. 개선기간
3. 개선명령이행의 보고시기에 관한 사항
4. 개선기간 중의 하수 또는 분뇨의 처리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선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한 경우 자체 없이 그 내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개선기간 중에 그 조치상황을 조사·확인하여 개선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